

2023년 제9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09-2(업무시설, 제1,2종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3. 10. 25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오스템글로벌 주식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09-2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5,410.19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준주거지역, 성장관리권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692.63㎡	건폐율	31.29%	층 수 지하 : 2층 지상 : 16층
	주 용 도	업무시설, 제1,2종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, 철골구조, 철근철골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동
	최고높이	69.9m	용적률	355.07%	연면적 합계 26,656.69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모든 지반조사 위치에서의 전단파속도 추가시험에 대해서는 최소한 BH-1과 BH-9 사이에서 추가시험하여 전단파속도가 설계에 적용된 S ₄ 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, 시험결과를 제출바람. ○ T0F+2.0m 기준으로 영구배수공법 적용 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바람. 또한, 장기적으로 주변 지반의 침하에 대한 영향이 없는지 검토하여 근거자료 제출바람. ○ 비교적 지반이 좋은 BH7, 8로 평가하여 지반종류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, 본 심의에 해당하는 BH1, 2, 7, 9, 10의 측정값으로 평가하여 검토자료를 제출바람. ○ 매스콘크리트의 품질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바람. ○ 풍하중에 강체, 유연구조물에 대한 검토자료와 조치계획서 내용이 상이함. ○ 이지리바 전단보강에서 전단보강 개수와 보강도상 개수 상이함. 일반 전단보강근 표기와 같이 직경/개수/간격, 보강영역으로 명확히 명기하여 제출바람. ○ 지상1층 차로구간 설계하중 변경 내용은 조치계획서에 있으나, 변경 전, 후 평면 및 부재변경 내용을 제출바람. ○ 장스팬부재의 오프닝 보강은 내력뿐만 아니라 사용성 처짐, 진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크기로 보이므로 재확인바람. 평면도에 개구부 표기 및 상세도면 제출바람. ○ 심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바람.			
	(토질)분야	○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바람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3년 제9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8-1(판매시설, 숙박시설,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	2023. 10. 25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롯데쇼핑(주)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	
	지 번	8-1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	52,038.0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중심상업지역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2,638.25㎡	건폐율	63.79%	층 수	지하 : 5층 지상 : 23층
	주 용 도	판매시설, 숙박시설,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,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	동
	최고높이	117.2m	용적률	260.13%	연면적 합계	296,831.65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	
	(구조)분야	○ 조치계획서에 명기한 것과 같이 기초 시공 전에 본 건물에 맞는 지반분류를 적용한 부재설계 및 성능설계 자료, 구조계산서, 전체 구조도면 제출바람. ○ 내수압 슬래브 FS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바람. (기본스팬이 아닌 경우, 조치계획서의 주동인접부등에 대한 보강도면 제출요) ○ 설계 변경 시 구조 재심의를 받기 바람. ○ 심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바람.				
	(토질)분야	○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바람.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